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004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105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00475 판결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김재성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45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E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E단체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 보조참가인이 D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 보조참가인이 그 이행을 위하여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보조참가인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D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D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12. 28. D에게, D이 E단체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8.로 된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D은 2011. 12. 29. E단체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았으며, 이후 보증기한이 2018. 12. 21.로 연장되었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5. D에게, D이 E단체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5.로 된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D은 2013. 12. 10. E단체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았으며, 이후 보증기한이 2018. 11. 30.로 연장되었다.

나. D은 2018. 5. 1.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D을 대위하여 2018. 7. 31. 1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72,253,082원, 2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258,498,46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8. 6. A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9. 9. A에게 도달하여 2018. 9. 28. 확정되었다.

라. A은 2018. 4. 13. 고양시 일산동구 F 공장용지 1,116㎡, 위 지상 G동호, H동호, I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45430호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K(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바.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8. 30.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A이 2019. 3. 5.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20209호, 2019하면202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6.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9. 12. 19.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20. 4. 14.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A의 적극재산은 시가 5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장건물 등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제7층 M호 중 1/2 지분 합계 737,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금의 합계만 하더라도 17억여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A이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5.경 E단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대위변제하게 된 사실, A은 2018. 5. 10.경 D에 대해 간이회생을 신청하고, 2018. 10. 19.경 A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실, A은 2019. 2. 15.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한 후 2019. 3. 5.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머지않아 회생 또는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A과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은 주식회사 O의 중개를 통해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840,000,000원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3년 전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등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도가 잘 되지 않았고, 최초 13억 원으로 설정하였던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피고에게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점, A과 피고 간에 실제로 체결된 것은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여 일 정도 지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점, A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중개한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N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 매각 될 경우 5,000만 원 이든 1억 원이든 줄 태니 매각을 해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6,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약정이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예약 체결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인권의 행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2018. 4. 13.자 매매예약이 부인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별지]

목 록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도로 10㎡ 중 의 공유지분
2분의 1 끝.